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6. 18.>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제9조제5항 관련)

구분	기본수수료	가산수수료
1.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증명	1통당 500원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 수수료를 가산한다.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1면당 200원	
나. 전산처리자료		
1) 1GB 미만	1,800원	
2) 1GB 이상 ~ 100GB 미만	1,810원	1GB당 10원
3) 100GB 이상 ~ 1TB 미만	2,800원	1GB당 20원
4) 1TB 이상 ~ 10TB 미만	21,280원	1GB당 30원
5) 10TB 이상 ~ 50TB 미만	297,760원	1GB당 40원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1면당 1,000원	

비고

1. 수수료는 제공되는 자료의 용량에 따라 기본수수료에 가산수수를 더하여 산정하되, 자료의 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1TB는 1,024GB로 본다.
2. 위 표 제1호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를 무료로 한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자료제공이 인터넷 또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본수수료 및 가산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4. 위 표 각 호에 따른 증명서 발급 및 자료제공이 배송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배송료 및 자료제공을 위한 저장매체(CD, USB, 하드디스크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